

1. 개정이유

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나,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군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군인의 적기 치료 보장 및 불필요한 의원급 진료방지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군인 추가 (안 제3조 등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4호”를 “제15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「군인사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「군보건
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급
여를 받으려는 경우

별표 1 제1호가목 단서 중 “제7호 또는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”를 “제9
호부터 제13호까지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의료급여의 절차)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(이하 “제1차의료급여기관”이라 한다)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(이하 “제2차의료급여기관”이라 한다)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(이하 “제3차의료급여기관”이라 한다)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, 제9호부터 <u>제14호</u>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	제3조(의료급여의 절차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5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4. (생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5. 「군인사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

② ~ ⑧ (생 략)	<u>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</u> <u>려는 경우</u> ② ~ ⑧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	---